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1부
2. 청 원 서 1부. 끝.

2016년 02월 16일

청 원 인

성 명 : 이 원 호

주 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이원호
건명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6년 02월 16일
<p>소개의견</p> <p>청원인 이원호 외 17명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 제 18회 임시회의에서 저희가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입니다.</p> <p>현재 대한민국의 소방공무원은 지방직공무원과 국가직공무원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 소방 본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동시에 받고 이로 인해 소방 업무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 간의 예산 차이로 인해 장비, 인력에 있어 지방끼리의 소방 서비스의 질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p> <p>저희 청원인들은 이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을 지방직공무원과 국가직공무원으로 나누어져 있는 현행을 개정하여 모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시켜 국민에 대한 소방서비스의 평준화와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본 안건을 발의해 국민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현실을 개선하고자 합니다.</p> <p>정치법제위원회 입법청원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p> <p>국정감사 및 조사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소방공무원법 29조 중에 22개조에 걸친 개정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용어 일괄 개정 (소방 공무원법 29조에 걸친 ‘지방직 소방공무원’ 용어 삭제 및 ‘국가직 소방 공무원’으로 전환)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지자체장의 인사권한에 대한 법률조항 제 3조의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이임 (지방 자치 단체장의 소방공무원 인사권한 및 통솔 권한 정지)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소방 공무원은 단순한 화재 진압을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24시간 3교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방 공무원은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등으로 인해 재난에 대한 소방 체계의 문제가 발견 되었다.

이는 소방 공무원이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분리 되어있어 발생 하는 문제점들이다. 소방 공무원이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분리 되어있어 발생하는 주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방의 재정 자립도나 시'도지사의 의지와 예산 배분에 따라 소방 서비스에 대한 지역적 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원 장비와 전문 인력 확보에 한계가 많아 소방장비와 개인안전장비가 부족하거나 노후화 돼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다.

둘째, 대형재난 발생시 소방방재청장과 해당 시'도지사의 이원화된 지휘를 받고 있으므로 신속한 대처가 힘들며 국가와 지방간 소방정책의 일관성 및 연계성을 유지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현재 이원화된 지휘 체계에서는 구급'구조'진화 작업시 지방직 소방 공무원은 업무지시를 내리는 소방방재청장의 지시 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자체장의 지시 또한 받아야 한다. 이로인해 지휘체계가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소방관 처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와 같은 근거를 들어 소방공무원의 전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 소방공무원법 개정을 청원 한다.

2. 주요골자

소방공무원법 29조 중에 22개조에 걸친 개정안

1.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위해 필요한 용어 일괄 개정

가)소방 공무원법 29조에 걸친 '지방직 소방공무원' 용어 삭제 및 '국가직 소방 공무원'으로 전환

2.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지자체장의 인사권한에 대한 법률조항 제 3조의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국민안 전처 장관에게 이임

나)지방 자치 단체장(이하 지자체장)의 소방공무원 인사권한 및 통솔 권한 정지

-신구문대조표-

현행법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방공무원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에 비추어 그 임용, 교육훈련, 복무,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총감(消防總監)	제2조(계급 구분) 소방공무원(국가소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계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소방공무원 소방총감(消防總監)

<p>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p> <p>2. 지방소방공무원 지방소방정감 지방소방감 지방소방준감 지방소방정 지방소방령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지방소방장 지방소방교 지방소방사</p> <p>제3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가 해당</p>	<p>소방정감(消防正監) 소방감(消防監) 소방준감(消防准監) 소방정(消防正) 소방령(消防領) 소방경(消防警) 소방위(消防尉) 소방장(消防長) 소방교(消防校) 소방사(消防士)</p> <p>2.(삭제)</p> <p>제3조(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人事)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조(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1.19.> 1.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및 기본계획 2. 소방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해당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5조(임용권자) ①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14.11.19.> 1.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한다. 2. 소방경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임용한다.</p> <p>②(삭제)</p> <p>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통령령으</p>
---	---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임용권자) ① 국가소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용한다. <개정 2014.11.19.>

1.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소방총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소방준감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국민안전처장관이 한다.

2. 소방경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임용한다.

②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한다.

③ 대통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의 신규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개정 2014.6.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임용권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신규채용)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위의 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된 사람(이하 "소방간부후보생"이라 한다)으로서 정하여진 교육훈련을 마친 사람 중에서 한다. <개정 2014.6.1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소방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1.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한 소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 시에 재직하였던 계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소방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2. 공개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소방에 관한 전문기술교육을 받은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사법시험법」에 따른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령 또는 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해당 시·도의 지방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04.12.30.>

④ 삭제 <2014.6.11.>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용하는 경우

5. 「국가공무원법」 제85조에 따라 재학 중에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6.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7. 경찰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8. 소방 업무에 경험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해당 시·도의 관할 소방서의 소방사 계급의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③ 삭제 <2004.12.30.>

④ 삭제 <2014.6.11.>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방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는 소방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의용소방대원을 지방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지역과 그 승진 및 전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7조(소방 공무원의 결원 보충 등) ① (삭제.)

②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등재(登載)된 후보자수가 결원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기관의 임용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제7조(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교류 등) ① 국가소방공무원 또는 지방소방공무원을 그 계급에 상응하는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소방공무원의 결원을 보충할 때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심사승진후보자명부 및 시험승진후보자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등재(登載)된 후보자수가 결원보다 적고, 인사행정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원된 계급에 관하여 다른 임용권자가 작성한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후보자명부 또는 승진후보자명부를 해당 기관의 임용후보자명부로 보아 해당 소방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시보임용) ① 소방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소방장·지방소방장 이하는 6개월간 시보로 임용하고, 소방위·지방소방위 이상은 1년간 시보로 임용하며,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 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④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 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0조 또는 제62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과 국가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

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그 임용과 관련하여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임용 기간에 포함한다.

④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소방공무원이 근무 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또는 제70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제9조(시험실시기관) ① 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 시험 및 승진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12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 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개정 2014.6.11.>

② 소방준감-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③ 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④ 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6.11.>

⑤ 삭제 <2004.12.30.>

⑥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②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시험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민안전처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소방령·지방소방경 및 지방소방위로의 승진시험 실시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소방위 결원의 일정 비율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선발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것을 해당 임용권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제4항에 따른 지방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의 선발인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수, 지방소방위의 정원, 결원 상황 및 승진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2조(승진) ① 소방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을 실증(實證)하여 승진임용한다. <개정 2014.6.11.>

②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 한다. 다만,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심사와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4.6.11.>

③ 소방정·지방소방정 이하 계급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 한 사람은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를 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를 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을 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 이하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순직한 사람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로 승진심사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1.>

④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 중 시험에 의한 승진은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14.6.11.>

⑤ 삭제 <2004.12.30.>

⑥ 소방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6.11.>

제12조의2(근속승진) ①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재직 한 사람은 소방교·지방소방교, 소방장·지방소방장, 소방위·지방소방위,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1. 소방사·지방소방사를 소방교·지방소방교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5년 이상 근속자

2. 소방교·지방소방교를 소방장·지방소방장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6년 이상 근속자

3. 소방장·지방소방장을 소방위·지방소방위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7년 6개월 이상 근속자

4. 소방위·지방소방위를 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근속승진임용하려는 경우: 해당 계급에서 12년 이상 근속자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소방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따른 근속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별유공자 등의 특별승진) ①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1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다만, 소방위·지방소방위 이하

2014.11.19.>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16조(거짓 보고 등의 금지) ① 소방공무원은 직무에 관한 보고나 통보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공무원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遺棄)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 4년

소방준감: 6년

소방정: 11년

소방령: 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공무원,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의 소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는 2계급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순직한 사람

3. 직무 수행 중 현저한 공적을 세운 사람

② 특별승진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교육훈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하여야 하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소방학교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②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획·조정, 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복무규정) 소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년) ① 소방공무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1. 연령정년: 60세

2. 계급정년

소방감·지방소방감: 4년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21조(심사청구)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간에 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불복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국가공무원법」 제75조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삭제.)

④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공

소방준감·지방소방준감: 6년

소방정·지방소방정: 11년

소방령·지방소방령: 14년

② 제1항제2호의 계급정년을 산정(算定)할 때에는 근속 여부와 관계없이 국가소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그 계급에 상응하는 계급으로 근무한 연수(年數)를 포함한다.

③ 징계로 인하여 강등(소방경·지방소방경으로 강등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2.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에는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제1항제2호에 따른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처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19.>

⑤ 소방공무원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당연히 퇴직하고,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21조(심사청구)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기간에 국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장관을 거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지방소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에 대한 불복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고 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삭제.)~~

③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징계 절차) ① 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한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개정 2014.11.19.>

~~② (삭제.)~~

③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민안전처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제25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피고로 한다.

- <개정 2014.11.19.>

2. 「국가공무원법」 제75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1항에서 정한 처분 외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22조(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②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소방령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③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지방소방공무원의 재심청구와 지방소방령 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설치된 시·도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④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징계위원회) ① 소방준감 이상의 국가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② 소방정 이하의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 시·도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에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11.19.>

③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구성·관할·운영, 징계의결의 요구 절차, 징계 대상자의 진술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징계 절차) ① 국가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되,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는 국민안전처장관이 한다. 다만, 과

제27조(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감독)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1.19.>

제28조(「국가공무원법」) ① 「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② (삭제)

제29조(벌칙) ①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경우에 제16조를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또는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면과 해임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사람은 제외한다)가 한다. <개정 2014.11.19.>

② 지방소방공무원의 징계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가 한다. 다만,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감봉 및 견책은 소방서장이 한다.

③ 소방공무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직근(直近)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구분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말한다)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1. 국민안전처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2.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국민안전처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3. 소방서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의결: 시·도에 설치된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

제25조(행정소송의 피고) 징계처분이나 휴직처분, 면직처분,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국가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피고로 하고, 지방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라 국가소방공무원의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피고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27조(국민안전처장관의 지휘·감독)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공무원의 인사행정이 이 법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도록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4.11.19.>

제28조(「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국가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1.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1항 및 제43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 중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본다.
3.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중 "제40조·제40조의2 및 제41조"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국가공무원법」 제68조, 제7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80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으로 본다.

② 「지방공무원법」을 소방공무원에게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1.19.>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41조 중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2. 「지방공무원법」 제41조의4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본다.
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 중 "제38조, 제39조 및 제39조의2"는 "이 법 제12조 및 제13조"로, "직급"은 "계급"으로 본다.
4. 「지방공무원법」 제60조, 제6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71조제7항 및 제8항 중 "이 법"은 "이 법 및 「지방공무원법」"으로 본다.

제29조(벌칙) ①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 업무에 동원된 경우에 제16조를 위반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또는 제58조제1항(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49조 또는 제50조제1항을 말한다)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② 소방공무원이 제17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청원인 성명 : 이원호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 ① 「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 ② 「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의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길동 (인) 외 24인(법인)

-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 ② 「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